

2021년 3월 1일 시행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jbgse.kr>/정보마당/
인사정보/교원인사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적용범위)	1
제 3 조 (방침)	1
제 2 장 신규 교원의 학교 배치	1
제 4 조 (신규교원 배치 순위)	1
제 5 조 (신규교원 배치 제한)	2
제 3 장 관외 전입교원 배치	2
제 6 조 (전입교원의 학교 배치)	2
제 7 조 (우선 전보)	2
제 4 장 교원 관내 전보	2
제 8 조 (전보 시기)	2
제 9 조 (전보내신의 기본 경력)	2
제 10 조 (장기근속교원의 정의)	3
제 11 조 (전보서열 순위)	3
제 12 조 (전보서열부의 유효기간)	3
제 13 조 (전보서열평정점의 평정시기)	3
제 14 조 (동점교사 처리)	3
제 15 조 (특수학급 담당교사 배치)	4
제 16 조 (장기근속 교원의 전보)	4
제 17 조 (비장기근속 교원의 일반전보)	4
제 18 조 (장기근속 교원의 유보)	4
제 19 조 (체육특기교사의 전보)	5
제 20 조의 1 (특기교사의 전보)	5
제 20 조의 2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5

제 20 조의 3 (전보의 특례)	5
제 21 조 (특기교사의 기준)	6
제 22 조 (근무여건개선전보 및 긴급전보)	6
제 23 조 (과원조정을 위한 전보)	6
제 24 조 (전보내신의 제한)	7
제 25 조 (2015.8.13. 삭제)	7
제 26 조 (교감 전보의 유보)	7
제 27 조 (보건교사 배치)	7
제 5 장 도서벽지학교 전보	7
제 28 조 (교사 도서벽지 의무순환근무 전보대상)	7
제 29 조 (교사 도서벽지근무 희망전보)	8
제 30 조 (도서벽지학교 근무 年限)	8
제 31 조 (도서벽지학교간의 전보)	9
제 32 조 (교감 도서벽지 의무전보 대상)	9
제 33 조 (교감 도서벽지학교 희망 순환전보)	9
부 칙	10
<추록 1> 교원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16
<추록 2> 도 규모 및 전국규모 인정대회	23
<추록 3> (2014.4.30. 삭제)	25
<추록 4> 군산교육지원청 관내 연구·시범학교일람표	26
<추록 5> 제5장 제29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전입자 수 조견표	27
<추록 6> 2018.8.14. 개정 이전 학교 급지별 가산점	2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 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 인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7.16. 개정)

제 2 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 시 공립유치원 교원, 공립 초등 교원, 특수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적용한다. (2020.7.16. 개정)

제 3 조 (방침)

본 시 유·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 ①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인사관계 제법규 및 본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 기준에 의하여 군산 관내 인사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2020.7.16. 개정)
- ② 학교(학급)경영 및 교육실적이 우수한 교원은 우대하여 근무 의욕을 높인다.
- ③ 장기 근속으로 인한 침체를 배제하고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④ 가급적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지를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기한다.
- ⑤ 부부교원 및 근친자(직계 존비속 등)는 동일교에 배치하지 않는다.(단, 도서 벽지제외)
- ⑥ 교원의 학교 배치는 전보 서열 평정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 성이 100%)에 남·여별로 서열부를 작성하여 교원의 성비를 고려하도록 한다.(단, 10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제외) (2017.8.16. 개정)
- ⑦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교육청의 통첩지시 및 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 2 장 신규 교원의 학교 배치

제 4 조 (신규교원 배치 순위) (2020.7.16. 개정)

- ① 신규교원은 임용후보자 서열부에 의거하되, 생활근거지, 단위학교의 특성, 교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② 가급적 특기교사는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 5 조 (신규교원 배치 제한) (2020.7.16. 개정)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기 중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 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3.1.4. 개정)

제 3 장 관외 전입교원 배치

제 6 조 (전입교원의 학교 배치)

전입 서열과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020.7.16. 개정)

제 7 조 (우선 전보)

- ① 체육특기교사는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교사란 ‘도교육청 유·초등교원인사관리기준 제 20조’에 의하여 체육특기교사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이하 같음)
- ② 도서벽지학교에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입도한 보건교사와 유치원교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지를 고려하여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제 4 장 교원 관내 전보

제 8 조 (전보 시기)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시행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정원의 변동
- ② 결원의 보충
- ③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④ 공인된 체육 특기교사의 전입으로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⑤ 도서벽지학교의 2년 만기자와 1년 이상 근무자중 육지학교 전보 희망자가 있을 경우
- ⑥ 타·시도, 타·시군 전출 교사가 있을 경우

제 9 조 (전보내신의 기본 경력)

전보 내신은 동일교 근속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교 6개월 또는 1년 이상 근속자도 전보 내신할 수 있다.

- ① 폐교, 학급감축 및 과원조정으로 관내전보 된 자는 6개월

- ② 도서벽지학교 근무자 및 도서벽지학교 의무순환 전보 대상 보건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1년
- ③ 삭제 (2020.7.16. 개정)
- ④ 삭제 (2018.1.19. 개정)
- ⑤ 삭제 (2018.1.19. 개정)
- ⑥ 특기교사로 제20조에 의하여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1년 (2005.1.28. 개정)
- ⑦ 특수학급 담임교사 배치 시 특수교사자격 소지교사 중 희망자가 없어 강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6월 (2006.2.10. 신설)

제 10 조 (장기근속교원의 정의) (2020.7.16. 개정)

장기근속교원이란 육지 동일교 5년 이상 근속자와 도서벽지학교 2년 이상 근속한 자를 말한다.(2019.12.27. 개정)

- ② 삭제 (2020.7.16. 개정)

제 11 조 (전보서열 순위)

전보서열 순위는 추록 1에 의한 전보 서열 평정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18.1.19. 개정)

제 12 조 (전보서열부의 유효기간)

전보서열부는 3월 1일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8.1.19. 개정)

제 13 조(전보서열평정점의 평정시기)

모든 평정점의 계산은 학년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 14 조 (동점교사 처리)

동점교사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순위: (삭제) (2017.8.16. 개정)

2순위: 교육 경력이 많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4순위: 급지가 낮은 학교의 근무자

제 15 조 (특수학급 담당교사 배치)

- ① 특수학급 담당 교사는 경합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 ② 특수학급 설치교의 특수학급 담임교사 배치 상 필요한 경우 본 시 지역 관내의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특수교육 연수이수자증 다음 순위에 의거 서열부를 작성하여 서열순에 의거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007.1.25. 개정)
 - 1순위: 특수교육 담당 경력이 없는 교사
 - 2순위: 특수교육 담당 경력이 적은 교사 중에서
 - Ⓐ 교육경력이 적은 교사
 - Ⓑ 생년월일이 늦은 교사 순으로 배치한다.
- ③ ①②항에 의해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강제로 전보된 교사는 동일교 근무 1년에도 특수학급 교사 수요에 지장이 없는 한 관내 전보 내신할 수 있다.
- ④ ②항에 우선하여 특수학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사로 임용된 자를 우선 전보한다. (2016.8.4. 신설)
- ⑤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가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보충을 요할 때, 결원학교에 전보를 희망하는 특수교사가 있을 시 결원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 (단, 정기인사에 한함) (2018.8.14. 신설)

제 16 조 (장기근속 교원의 전보)

동일교 장기근속 교원의 관내전보는 본인의 희망학교 순에 의하되, 경합으로 인하여 희망학교로의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 전보한다. (2019.12.27. 개정)

제 17 조 (비장기근속 교원의 일반전보)

본인의 희망 학교 순에 따라 1지망 우선으로 전보하되 3지망까지 전보가 불 가능할 경우는 유보한다.

제 18 조 (장기근속 교원의 유보)

다음의 경우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유보할 수 있다.

- ① 도 지정 이상의 연구(시범·실험) 학교로서 연구가 진행 중인 학교의 연구 부장교사 또는 연구주무자(1년)
- ②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학급을 담당한 교사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전입희망이 없을 경우(1년까지)
- ③ 타시·도 및 타시·군 전보 내신교사로서 당해학년도 전보권내에 들어 있는 자(1년)
- ④ 체육특기교사 및 체육담당교사로서 지정종목에 대한 실적을 거둔 자 (당해년도 도대회 2위 이상의 실적이 있을 때마다 1년)

- ⑤ 전보 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감, 정년 잔여 기간 2년 미만인 교사 (2012.1.12 개정, 2012.3.1. 인사부터 적용)
- ⑥ 직무와 관련된 특수훈련을 받고 있는 자
- ⑦ **삭제 (2019.2.8. 개정)**
- ⑧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1년 동안 전보유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유보요청은 교원 정원의 10% 이내(①-④,⑥)에서 단위학교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혁신학교 만기근무자는 2년 이내에서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2014.12.31. 개정)
- ⑨ 혁신⁺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학교의 필요와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5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재직교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16.2.11. 신설)

제 19 조 (체육특기교사의 전보)

체육특기교사는 5년간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고, 체육 지정종목 육성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017.8.16. 개정)

제 20 조의 1 (특기교사의 전보)

특기교사는 요청 학교장의 전입내신과 전출 학교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도지정 이상의 연구학교는 5%범위 내에서 우선 배치, 체육육성종목 팀창단 학교에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020.7.16. 개정)

제 20 조의 2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2011.1.17 개정)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교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입요청은 정원의 5% 이내에서 단위학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삭제) (2020.7.16. 개정)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제외한다.) (2018.12.18. 상세화)

- ③ 전입요청대상교사 수가 많을 경우, 연차적으로 나누어 요청하되, 연도별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입요청교원이 전출해야만 전입 요청할 수 있다.

제 20 조의 3 (전보의 특례)

- ① 국내 파견교원(시·도간 교류 파견교사 제외)의 파견기간은 군산시 및 동일학교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 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교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016.8.4. 신설)

제 21 조 (특기교사의 기준)

특기교사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 ① 특기분야에 대한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② 도대회 이상의 각종대회(연구발표, 과학전시회, 학습자료전, 기능장, 기타)에서 입상한 자 및 도 대회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③ 기타 학교 경영상 필요한 자

제 22 조 (근무여건개선전보 및 긴급전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다. 단, 제6호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 전보한다.

- ① 해당 연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 ② 감사 결과 인사조치가 권고된 자
- ③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 ④ 지역사회에서 특정 교육공무원을 기피하거나 불화가 있어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한 자
- ⑤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⑥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원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제 23 조 (과원조정을 위한 전보)

① 신설학교의 개교 및 학구의 변경, 기타 요인으로 인한 정원변동으로 과원을 조정할 때 해당 학교장의 내신에 의거 전보한다. 단, 직원조직상 불가피할 경우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정 보충할 수 있다.

② 신설학교의 개교 시 전보의 원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폐교 및 정원감축으로 인한 과원조정 대상교원은 동일지역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012.1.12. 개정, 2012.3.1.자 인사부터 적용)

③ 모든 복직자가 원적학교 복직이 불가능하여 타교로 복직된 후 관내전보를 희망할 때 전임교 근무기간을 동일교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2019.8.1. 문구 수정) (2020.7.16. 개정)

-삭제 (2018.8.14. 개정)

④ 폐교 및 정원감축으로 인한 과원조정으로 전보된 교원은 전임교 근무기간을 동일교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2012.1.12. 신설) 다만, 정기인사가 발표된 후부터 2월 말일 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학급감축, 정원감축, 폐교 등으로 인하여 3.1.자 전입교사가 학교장 내신에 의거 과원전보 대상자가 되는 경우, 전전임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 기간을 동일교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2020.2.27. 개정)

⑤ 폐교, 학급 감축, 정원 감축 등 과원조정으로 전보할 경우 동일지역, 동일급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단, 원활한 수급 조정이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18.8.14. 신설) (2020.7.16. 개정)

⑥ 휴직복직자와 파견복귀자가 원적교복직(복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전보한다.(단, 정기인사에 한함)(2020.7.16. 신설)(2020.8.7. 개정, 2022.3.1.자 정기 인사부터 적용)

제 24 조 (전보내신의 제한)

동일교에서 가급적 교사정원의 1/2 이상을 전보 내신하지 않는다. 단, 동일교에서 장기근속자가 상기 비율을 초과할 때와 4, 5급지 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5 조 (2015.8.13. 삭제)

제 26 조 (교감 전보의 유보)

동일교 5년 이상 근속한 교감으로 연구(시범·실험)학교 운영 및 체육특기 종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1년간 유보할 수 있다.

제 27 조 (보건교사 배치)

12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휴직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보충을 요할 때, 결원학교에 전보를 희망하는 보건교사가 있을 시 결원학교에 전보 할 수 있다.(단, 정기인사에 한함) (2019.12.27. 신설)

제 5 장 도서벽지학교 전보

제 28 조 (교사 도서벽지 의무순환근무 전보대상)

결원이 생긴 도서벽지학교에 전보 희망교사가 없을 경우 육지학교에서 동일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와 동일교 1년 이상 근무한 보건교사,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다음 순에 의하여 매 학년도 초에 작성(제29조 적용시는 작성하지 않음)한 도서벽지 학교 순환전보 서열에 의거 희망학교에 배치한다. (2018.8.14. 개정)

1 순위: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이 없는 자

- 가. 교육경력이 적은 자(교육경력 중간 병역복무기간은 교육경력으로 간주함)
- 나. 생년월일이 늦은 자

2 순위: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가. 육지학교 근무기간이 많은 자(타시군에서 도서벽지학교 근무 경력도 본시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과 동일경력으로 간주함)
- 나.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 29 조 (교사 도서벽지근무 희망전보)

도서벽지지역 전보 희망자의 서열은 동일교 5년 간의 근무경력을 합산하되 농어촌 가산점 미부과 학교와 농어촌 가산점 부과 학교의 비율은 별도의 조견표에 따라 다음에 의거하여 배치한다. 단, 도서벽지지역 전입자 총수가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2014.4.30. 개정)

① 육지학교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한 교사, 동일교 1년 이상 근무한 보건교사, 유치원교사로서 자진하여 도서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도서벽지학교 순환근무서열에 구애없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열부를 작성하여 서열에 따라 희망학교에 전보한다. (2014.4.30. 개정)

가.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자와 타시·도와 타시·군을 포함하여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있더라도 3년이 경과된 자를 1순위로 하여 배치한다.

단, 도서벽지학교 전입교사가 전입한 지 30일 미만의 기간 내에 학교장 내신에 의거 과원 전보된 경우는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한다.

(2020.7.16. 신설) (2021.3.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

나. 타시·도, 타시·군을 포함하여 도서벽지학교 근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2순위로 한다.

다. 도서벽지 희망자가 육지교를 동시에 2종으로 희망하는 경우 도서벽지를 1희망지로 간주한다.

라. 군산 관내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중(2018.12.18. 상세화) 도서벽지에 지원하는 교사에 한하여 군산지역 점수를 부여한다. 본시 계속 근무 10년부터 1점으로 평정하고 연차적으로 1년마다 0.2점을 가산한다. 단, 2점을 초과할 수 없고,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2020.7.16. 개정, 2022.3.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 (월 0.017점)

근무년수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상	비고
부여점수	1.0	1.2	1.4	1.6	1.8	2.0	1년마다 0.2점 가산

② 부부교사가 동시에 도서벽지근무를 희망할 때에는 서열이 빠른 자의 해당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단, 동일자 발령에 의하며 부부가 모두 도서벽지 가능 서열권에 들어 있어야 한다.

③ ①, ②항에서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타시·군 전입자와 신규임용자 중에서 배치할 수 있다.

제 30 조 (도서벽지학교 근무年限)

① 도서벽지학교 근무年限은 2년 이내로 한다. (2012.1.12 개정, 2013.3.1.인사부터 적용)

② 삭제 (2020.7.16. 개정)

③ 2018.3.1.자 정기인사 이후 도서벽지학교의 9.1.자 정원보충이 필요할 경우

발령대상자 중 고득점자 희망순(별도 서열부에 의거)으로 발령하되, 근무년한을 1년 6개월로 한다. (2018.1.19. 신설)

④ 도서벽지학교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0.7.16. 신설) (2021.3.1.부터 적용)

제 31 조 (도서벽지학교간의 전보)

도서벽지학교간의 전보는 하지 아니한다. 단, 정원 변동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산 년 수가 2년 이내에서 도서벽지학교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제 32 조 (교감 도서벽지 의무전보 대상)

타시·군 전입자와 신규임용 교감을 대상으로 다음 순에 의하여 작성한 (제33조 적용 시는 작성하지 않음) 매 학년도 도서벽지학교 순환전보 서열에 의하여 희망 학교에 전보 배치한다. (2014.4.30. 개정)

①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1순위로 한다.

1순위: 교감 경력이 적은 자

2순위: 교육 총경력이 적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자

②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2순위로 한다.

1순위: 육지학교 근무기간이 많은 자

2순위: 교감경력이 적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자

제 33 조 (교감 도서벽지학교 희망 순환전보)

본 시 육지 동일교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도서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순에 의하여 서열부를 작성하고 희망학교에 배치한다. (2014.4.30. 개정)

①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1순위로 한다.

1순위: 본시 교감 경력이 많은 자

2순위: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②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2순위로 한다.

1순위: 본시 육지학교 근무기간이 많은 자

2순위: 교감경력이 많은 자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③ 제33조의 ①, ②항에서 도서벽지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타시·군전입자와 신규임용자 중에서 희망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여자교감은 희망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한다. (2007.1.25. 개정)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이 기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는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1997학년도중의 인사관리는 통합전 기준에 의한다.

제 2 조 (경과기간의 급지점) 1993.3.1 – 1997.2.28 기간중 군산‘가’ ‘나’ 지역에서 근무한 교원의 학교급지는 통합전의 급지를 적용하되 급지점은 통합후의 급지점수로 평정하고 위 기간중 군산‘나’지역 근무교원에게는 2001.2.28까지 년 1점씩의 지역부가점을 부여한다.

제 3 조 (통합전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통합전 군산 ‘가’ ‘나’지역의 인사관리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 (기타) 이 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 발생한 때는 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1998.7.13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제7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개정)

이 기준안은 1998.9.1부터 시행하되, 제27조는 1999.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7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신설)

제 5 조 (신설) 기준안 제3조, 제5조, 제10조의 교사의 성별 조정 학교배치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교(도서벽지학교 등)는 본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조정,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31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2조, 제3조①항, 제4조②항, 제6조③항, 제7조②항, 제8조⑦항, 제9조②④항, 제10조, 제11조①②②항, 제16조①②항, 제20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③항, 제29조의 삭제 및 문구수정 및 삽입

부 칙 (2002.2.18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신설)

제9조 ⑤항과 제15조 ③항

부 칙 (2003.2.5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10조개정, 추록1-가 학교급지조정, 추록1-사(4)연구학교근무가산점 개정, 추록1-사(12)학생지도실적개정, 추록1-사. 우대가산점 (17)교육활동 유공교원 가산점 신설

부 칙 (2004.2.2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9조⑤항개정, 제10조②항신설, 제20조개정, 추록1-가 개정, 추록1-사-(17)-나개정, 추록3 도서벽지학교배치순개정

제9조⑤항, 제10조②항, 제20조, 추록3 도서벽지학교배치순은 2004. 3. 1일자 인사부터 시행, 추록1-가 6급지 어청도는 2004. 3. 1일전입자부터 시행,

추록1-사-(17)-‘나’는 200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8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9조⑥항신설, 제20조개정, 제23조③항신설, 추록1-사-(12)-⑦개정, 추록1-사-(15)개정, 추록1-사-(17)개정, 추록2-21항신설, 추록4-2004학년도 추가 2005. 3. 1일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5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28조 ① 및 ③항 개정, 추록1-가 진포(1급지), 미성(3급지)신설, 용문(3급지 →2급지)급지변경, 폐교 삭제 개정, 추록3 개정, 추록4-2005학년도 추가 2006.3.1.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0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9조 ⑦항 신설, 제 20조 일부 삭제 개정
2006.3.1.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5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1조 개정, 제2조 개정, 제4조 개정, 제5조 개정, 제15조 ②항 개정, 제31조 개정, 제32조 ④항 개정, 추록1 바(9) 개정, 추록1 바(11) 개정, 추록1 바(17)신설
2007.3.1.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4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1조 개정, 제2조 개정, 추록1 다. 유치원겸직교사근무 삭제, 사(8)유치원 겸직교사 삭제, 추록1 바. (18)파견교사 신설
2008.3.1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9.26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4조 개정, 제18조 ⑧항 신설, 추록1 바. 우대가산점 (12)항 개정,
추록1 라 영어전보 가산점 개정
2009.3.1.자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18조 ⑧항 삭제 및 ⑨항 개정, 제20조의 1 문구삭제 및 제20조의 2 ②③항 개정, 제23조의 ③ 개정, 추록1 바. 개인포상개정, 노부모봉양 · 전산능력 보유교원 · 우수학교근무교원 · 우수교사 가산점 삭제, 6학년 담임 가산점 신설, 추록1바(4)연구학교 근무 문구수정 및 삭제(10) 문구삭제
본 기준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2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2장 5조 개정, 제3장 6조 ②항 삭제, 제3장 8조 ⑤항 및 10조 개정, 제4장 18조 ⑤항 개정, 제4장 23조 ②항 개정 및 ④항 신설, 제5장 28조 개정 및 ①의 라항 신설, 29조 ①항 개정, 아리율초 급지 조정

본 기준은 2013.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3.1.4.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2장 제 5조 ②항 신설, 제 4장 제 20조의 1 개정, 제 4장 제 20조의 3 신설, 제 5장 제 28조 개정, 오식도초등학교 급지 지정

본 기준은 2013.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4.4.30.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4장 제20조의 3, 제5장 제27조, 제5장 28조, 제5장 31조, 제5장 32조, <추록1> 바 (1) ① 개인포상, <추록1> 바 (3) 연구실적, <추록1> 바 (11) ⑦, <추록2>, <추록4>, <추록5> 개정, <추록3> 삭제

본 기준은 2015.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4.12.31.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제18조(장기근속 교원의 유보) 개정, 제20조의 3(전보의 특례) 단서 삭제, <추록 1> 바-(9)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바-(10)교과전담교사 우대가산점은 2015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12.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28조(교사 도서벽지근무 희망전보) ① 라항 단서 삽입

본 기준은 2016.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5.8.13.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22조(부실교원 전보 대상) 개정, 제25조(부실교원의 전보제한) 삭제

본 기준은 2016.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6.2. 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18조(장기근속 교원의 전보) ⑨항 신설, <추록 1>교원전보 서열부작성 평정기준 가. 학교급지별가산점 군산중앙유치원 급지 신설, 나. 근무성적 단서조항 삽입, 바. 우대가산점 (11)교원실적 및 학생지도실적 ①항 단서조항 삽입

본 기준은 2017.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6.8.4.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4장 제15조(특수학급 담당교사 배치) ④항 신설, 제20조의 3(전보의 특례) ②항 신설, <추록 1>교원전보 서열부작성 평정기준 바. 우대가산점 (10)교

과전담교사 ③항 및 단서조항 신설

본 기준은 2017.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7.2.10.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추록 1> 교원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가. 학교급지별 가산점 개정(군산, 군산중앙 : 급지 조정)

바. 우대가산점 (3) 연구실적 : 안내 사항 추가 명시, (10) 교과전담교사 가산점 : 변동 적용 시기 추가 명시, (11) 교원실적 및 학생지도 실적 ①, ⑥ 항 문구 수정

본 기준은 2018.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7.8.16.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3조 ⑥항 신설, 제14조 근무성적 삭제, 추록1 근무성적 삭제, 제19조 개정, 추록1 가. 학교 급지별 가산점 일부 개정(◦군산경포, 군산수송, 군산신흥, 군산신풍 : 가지역 2급지, ◦군산남 : 가지역 3급지, ◦군산미장 : 가지역 1 급지, ◦당북 : 나지역 2급지, ◦새만금 : 오식도 교명 변경), 추록1 바. (20) 우대가산점 신설

본 기준은 2018.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8.1.19.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8년 9월 1일 인사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⑤항은 2018년 9월 1일자 교(원)감 발령자부터 적용하며, 제11조(전보서 열 순위)는 2020년 3월 1일자 정기인사부터 시행한다. 추록1-바-(16)교육활동 유공교원 가산점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8년 8월 31일까지의 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부 칙(2018.8.14.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인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2018.8.14. 개정사항 상세화 및 추가기록

제 15조 ⑤항 신설, 제 20조의 2 ②항 신설 및 상세화, 제 23조의 ③항 개정, ⑤항 신설, 제 28조 ① 라항 상세화, 제 29조의 ③항 신설

<추록 1> 가. 학교 급지별 가산점(2019.2.28.이전과 2019.3.1. 이후로 구분하

여 추가기록)

<추록 1> 바. 우대가산점 (16) 교육활동 유공교원 가산점 개정, 나항 신설
(23) 1학년 담임교사 가산점 신설, (24) 보건교사 가산점 신설

<추록 2> 도 규모 및 전국규모 인정 대회명 수정

본 기준은 2019.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9.1.3.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추록 1> 바. 우대가산점 (10) 교과전담교사(2019.2.28.실적까지 인정)
(2019.1.3. 추가기록)

부 칙(2019.2.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4장제18조⑦항 삭제

부 칙(2019.8.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4장제23조③항 ‘과원조정을 위한 전보’ 문구 수정

<추록 1> 바. 우대가산점 (1) 포상 ①항 ‘개인포상’ 문구 수정, ②항 ‘학교포상’ 삭제 및 단서조항 추가, (8) ‘복식 학급 담임교사’ 단서조항 추가
(11) 교원실적 및 학생지도실적 ① 문장 재배열, ⑦ ‘통합 4점’으로 개정
(13) 장애인 부양 가산점 개정, (16) 교육활동 유공교원 가산점 상세화, (17) ‘3자녀 이상 출산교원 가산점’ 용어 명확화
본 기준은 2020. 03. 0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19.12.2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제4장제10조①항 일부 삭제 개정, 제16조 일부 문구 삭제, 제27조(보건교사 배치) 신설

본 기준은 2020.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부 칙(2020.2.2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4장제23조④항 단서 조항 추가

부 칙(2020.7.16.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도서학교’라는 문구를 ‘도서벽지학교’로 수정(인사관리기준 전반 수정)

제1장제1조 ‘목적’ 문구 수정, 제2조 ‘적용범위’ 문장 정선 및 수정, 제3조 ‘방침’ 일부 수정

제2장제4조와 제5조 ‘신규교원의 학교 배치’ 조명 수정 및 내용 정선

제3장제6조 ‘전입교원의 학교 배치’ 내용 수정

제4장제9조③항 삭제, 제10조 조명을 ‘장기근속교원의 정의’로 수정, 제10조②항 삭제, 제15조 일부 문구 삭제, 제20조의 1 ‘특기교사의 전보’ 일부 문구 삭제, 제20조의 2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②항의 단서조항 중 인원산출에 관한 내용 삭제,

제23조③항, ⑤항 일부 문구 삭제, ⑥항 신설

제5장제29조 ①항 문구 일부 삭제, 가. 단서조항 추가, 라. 일부 수정(본시계속근무 가산점 부여 근무년수를 10년으로 상향), 제30조②항 삭제, 제30조④항 신설

<추록1> ‘교원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가. 학교급 가산점 축소, 라. 영어 전보가산점 축소, (8) 복식학급담임교사 가산점 축소, (18) 파견교사 가산점 세분화 (가. 군산발명교육센터 파견교사 가산점 별도 신설), (25) 대규모학교 근무 교감 가산점 신설, (26) 과밀학급 담임 가산점 신설

<추록5> ‘도서벽지지역 전입자 수 조견표’ 수정(2022.3.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

부 칙(2020.8.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제4장제23조⑥항 유예기간 적용(2022.3.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

본 기준은 2021.3.1.자 인사부터 적용한다. 단, 적용시점이 명시된 항목은 그 기준에 따른다.

<추록 1> 교원전보 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전보 서열부 작성은 학교 소재 급지별 가산점(현임교 최근 5년간), 현임교 근무 최근 5년까지의 우대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단, 통폐합 및 과원 조정으로 전보된 교원의 경우 직전학교 근무지의 가산점 합산) (2017.8.16. 개정)
(단, 정기인사 발표 후부터 2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학급감축, 정원감축, 폐교 등으로 인하여 3.1.자 전입교사가 학교장 내신에 의거 과원전보 대상자가 되는 경우, 전전임교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 기간 인정) (2020.2.27. 신설)

작성의 근거는 인사기록카드와 공문상의 기록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정

가. 학교 급지별 가산점 (개정 2017.8.16.) (개정 2018.1.19.) (개정 2018.8.14.)

(2019.2.28.이전 가산점 추가기록 2018.12.18.) (개정 2020.7.16.)(2021.3.1. 근무자부터 개정 가산점 적용)(2021.2.28.까지는 현 가산점 적용)

- ① ()안은 월단위 평정점임
- ②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③ 연단위점수+잔여월수의 월단위 점수의 합(이하 연단위+월단위에는 모두 적용)

급 지	2018.3.1. 적용		2018.9.1. 적용		2019.2.28. 이전 가산점	2019.3.1. 이후 가산점	2021.3.1. 이후 가산점
	기지역	나지역	기지역	나지역			
1	지곡,서해,진포,푸른솔, 용문,아리율(2012.3.1.) (미장 : 2018.3.1. 자 전보자부터 적용)		지곡,서해,진포,푸른솔, 용문,아리율(2012.3.1.) (미장 :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0.50 (0.042)	0.50 (0.042)	0.50 (0.042)
2	구암,동,금광,산북, 미룡,소룡,홍남,문화, 나운 (경포,수송,신흥,신풍 :2018.3.1. 자 전보자부터 적용)	대야,발산,개정, 우산,성산, (당록:2018.3.1.자 전보자부터 적용)	구암,동,금광,산북, 미룡,소룡,홍남,문화, 나운 (경포,수송,신흥,신풍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대야,발산,개정, 우산,성산, (당록:2018.3.1.자 근무자부터 적용)	0.75 (0.063)	0.65 (0.054)	0.55 (0.046)
3	서,월명,풍문,내홍, 미성,문창, (군산,중앙:2017.3.1.자 전보자) (남 : 2018.3.1. 자 전보자부터 적용) 우리별유치원 바다유치원, 군산중앙유치원	임피, 서수 옥구, 회현 나포, 옥봉	서,월명,풍문,내홍, 미성,문창, (군산,중앙:2018.9.1.자 근무자) (남 :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우리별유치원 바다유치원, 군산중앙유치원	임피,서수 옥구,회현, 나포,옥봉	1.00 (0.083)	0.80 (0.067)	0.60 (0.050)
4	해성, 내초분교 새만금(2013.3.1.)	술산,선연,금암, 창오,대야남, 마룡,오봉, 광산분교	해성,내초분교 새만금(2013.3.1.)	술산,선연,금암, 창오,대야남, 마룡,오봉, 광산분교	1.25 (0.104)	0.95 (0.079)	0.65 (0.054)
5		어청도,개야도, 선유도,신시도, 비안도,무녀도, 야미도(분)		어청도,개야도, 선유도,신시도, 비안도,무녀도, 야미도(분)	1.50 (0.125)	1.10 (0.092)	0.70 (0.058)

※2018.3.1. 이전 학교 급지별 가산점은 <추록 6> 참조

나. 삭제 (개정 2017.8.16.)

다. 삭제 (개정 2018.1.19.)

라. 영어 전보가산점(2020.7.16. 개정) (2022.3.1.자 정기인사부터 개정가산점 적용)

구분	NEW TEPS 점수	TOEIC 점수	TOEFL 점수			2021.3.1. 적용 전보가산점	2022.3.1. 적용 전보가산점
			PBT	CBT	IBT		
점수	534 이상	960 이상	630 이상	283 이상	116 이상	1.50	0.750
	502 이상	930 이상	620 이상	273 이상	111 이상	1.25	0.625
	446 이상	875 이상	601 이상	257 이상	103 이상	1.00	0.500
	392 이상	815 이상	580 이상	240 이상	95 이상	0.75	0.375
	309 이상	700 이상	540 이상	217 이상	82 이상	0.50	0.250
	273 이상	635 이상	517 이상	193 이상	70 이상	0.25	0.125

※ 영어기능장과 중복사용 불가

마. 유치원교사 동화구연대회 가산점(가장 우수한 입상분 1회만 가산)

등급	1	2	3
가산점	0.3	0.2	0.1

바. 우대가산점(현임교 최근 5년)

(1) 포상(2014.4.30. 개정)

- ① 개인포상: 최고훈격 1회분에 한하여 평정(직위나 근무 시군, 수상시기 제한 없음)
(2019.8.1. 문구 수정)
- ② 학교포상: 최고훈격 1회분에 한하여 동일 재직교에 한함.(2019.8.1. 삭제)
단, 2020.2.29. 실적까지는 인정함. (2019.8.1. 추가)

훈격별	평정점
훈장 · 포장 · 모범공무원 (모범교원대상포함:교육감)	2.50
대통령 표창 (모범교원상포함:교육감)	2.00
국무총리 표창	1.50
장관 표창	1.00
교육감(총 · 학장) 표창	0.50
교육장 표창	0.25

○ 포상 사본 1부

(2) 효행교원(1회에 한함)

(2012.1.12. 삭제, 2013.3.1.자 인사부터 적용)

(3) 연구실적(2.5점을 초과할 수 없음)(2017.2.10. 개정)

등급	규모 전국 규모	도 규모(*)	도 규모 (단, 2015년 3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점수부터 적용)
1	2.0	1.00	1.00
2	1.5	0.50	0.75
3	1.0	0.25	0.50

- 인정범위 : 1년에 1종목 입상분만 인정(상장사본 1부)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7조 3항 3조의 규정에 의한 학위논문을 포함한다.

(석사학위 2.0점, 박사학위 2.5점)

- 도규모(*) : 2015.3.1. 이전에 취득한 점수

(4)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2.5점을 초과할 수 없음)(2011.1.17. 삭제 및 문구 수정)

- 동일년도의 중복 부가점은 상위 점수 1개만 적용
- 도지정, 시교육청지정 시범 유치원 원감 포함

지정 구분	시 지정	도 지정	교육과학기술부지정
1년에 부가점	0.384	0.400	0.500
1월에 부가점	0.032	0.033	0.042

※ 2003.2.28.까지는 시지정 1년 0.250, 1월 0.021

- 도교육청 지정 교육실습 협력학교 1년에 0.4점(2005년 3월 1일 근무한 교원부터 적용) 단, 유치원교사는 1년 1회에 0.2점, 2회 이상은 0.4점(2013년 3월 1일 근무자부터 적용) (2013.1.4. 개정)

(5) (2018.8.14. 삭제)

(6) (2011.1.17. 삭제)

(7) 교감 학급담임 근무 가산점(법정 학급담임 교감)

- 학급 담임 교감 명부 확인
- 근무기간: 1년 1.0(월 0.083)

(8) 복식학급 담임교사(2.0점을 초과할 수 없음)(**2020.7.16. 개정**) (**2021.3.1.부터 개정 가산점 적용**) (**2021.2.28.까지의 실적은 현 가산점 적용**)

- 1년에 **0.125점**(월 0.010)
 - 단, 도서벽지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한 교사는 1년 **0.25점**(**월0.021**)
 - 2019.2.28.까지는 계약제 강사가 있는 경우 복식학급 담임교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2019.8.1. 추가)

(9)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① 1년에 0.25점(월 0.021)(2007.1.25. 신설, 통합학급점수는 2006.3.1.부터 인정)
- ② 삭제 (2018.1.19. 개정)

(10) 교과전담교사(1.5점을 초과할 수 없음)(2017.2.10. 개정)

- ① 삭제 (2018.8.14. 개정)
 - ※ 교과전담교사 가산점은 2019.2.28. 실적까지 인정(2019.1.3. 추가기록)
- ② 원어민(미군자원봉사자)과 함께 하는 영어교육 주무자(2018.8.31.까지 적용)
- ③ 삭제 (2018.1.19. 개정)

(2015.3.1.근무자부터 적용)

담당년수	1년	2년	3년	4년
가 산 점	0.25	0.5	0.75	1.0

※ 월단위는 월 0.021 [2015.3.1.이전 부과 점수: 1년(0.5점), 월(0.042)]

(11) 교원실적 및 학생지도실적

구 분 등 위	전 국		도	시
	소년체전	기 타		
1 위	2.50	1.75	1.25	0.75
2 위	2.00	1.50	1.00	0.50
3 위	1.75	1.25	0.75	0.25

※ 소년체전 취득점수는 2003.3.1. 이후부터 적용함

- ① 군산교육지원청에서 발송하는 공문지시에 따른 대회만 인정함
업무경감차원의 단순한 공문게시기능을 활용한 공문은 제외함(결재과정을 거친 공문지시에 따른 대회만 인정함) (2017.2.10. 개정)
도 및 전국대회규모 인정은 <추록2>의 대회에 한함. (2019.8.1. 문장 재배열)
- ② 각종 대회에서 동일종목을 지도하여 수상한 실적은 최고 훈격 1회분에 한함.
(대회별 수상등급은 최상위로부터 3위 이내)
예)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입선으로 수여 시 은상까지만 해당됨.
- ③ 동일교사가 영역을 달리하여 지도한 경우 이를 지도실적으로 인정

- ④ 동일 영역에서 2인 이상이 입상되였더라도 최고 훈격 1인만 인정
- ⑤ 평정자료 제출 시 대회참가 신청서(신청 공문), 상장사본(학교장 확인서 제출)
- ⑥ <추록2>에 명시되지 않은 도규모 이상의 대회는 군산교육지원청의 공문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시대회 입상 실적으로 인정 (2017.2.10. 개정)
 - ⑦ 학생지도실적은 시규모대회 및 도 대회 이상에서 실적을 거둔 경우, 통합 4점을 넘지 아니한다. (2019.8.1. 개정)
(동일종목 1년 이내 지도교사 변경 불가 단, 지도교사 전출시 변경 가능)
-삭제-(2018.8.14. 개정)
 - ⑧ <추록 2>에 준하는 대회가 학년 도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⑨ 군산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대회의 입상 결과 시 대회 지도실적으로 인정(2001.3.1. 이후부터 적용)
 - ⑩ 체육지도실적 우수교사 가산점은 현행과 동일하며, 담임교사에 대하여 전국소년체전 입상 0.5점, 전국규모대회 및 동계체전 입상 0.25, 도단위대회 0.125점 부여(2007.1.25. 신설, 2006년 지도실적부터 인정)

(12) (2011.1.17. 삭제)

(13) 장애인 부양

○ 장애인 배우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직계 존비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교원에게 1점 부여(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1대에 한함)(2019.8.1. 개정)

(14) (2011.1.17. 삭제)

(15) (2011.1.17. 삭제)

(16) 교육활동 유공교원 가산점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수여하는 교육장상 (표창장에 한함)(2019.8.1. 상세화)은 현임교 근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2018.8.31.까지의 실적은 모두 인정한다. (2018.1.19. 개정)
가. 삭제(2018.1.19. 개정)

- 나. 삭제(2018.1.19. 개정)
- 1회 0.25점 부여
 - 우대가산점 중 (1)의 ① 개인포상의 교육장상과 (16)교육활동 유공교원 가산점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8.8.14. 신설)
- (17)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 가산점(2007.1.25. 신설)
-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에게 1점 부여(2019.8.1. 용어 명확화)
- (18) 파견교사(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 군산발명교육센터 파견교사: 1년에 1.0점(월 0.083점, 2021.3.1. 근무자부터 적용)
(2020.7.16. 신설)
- 나. 기타 파견교사: 1년에 0.5점(월 0.042점, 2008.3.1. 근무자부터 적용)
- (19) 6학년 담임교사(2011.1.17. 신설)
- 1년에 0.25점(월 0.021점, 2011.3.1. 근무자부터 적용)
- (20) 원도심학교 근무 교원 가산점(2017.8.16. 신설)
- 1년에 0.1점(월 0.008점, 2018.3.1. 근무자부터 적용)
- (21)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2018.1.19. 개정)
- 1년에 0.75점(월 0.0625점)
- (22) 발명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발명전담교사(2018.1.19. 개정)
- 1년에 0.25점(월 0.021점)
- (23) 1학년 담임교사 가산점(2018.8.14. 신설)
- 1년에 0.25점(월 0.021점, 2019.3.1. 근무자부터 적용)
- (24) 보건교사 가산점(2018.8.14. 신설)
- 30학급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 1년에 0.25점(월 0.021점, 2019.3.1. 근무자부터 적용)

(25) 대규모학교 근무 교감 가산점(2020.7.16. 신설)

- 30학급 이상 1년 0.25점(월0.021)
 - 24학급 이상 1년 0.20점(월0.017)
- *특수학급 포함 학급수임 (2021.3.1. 근무자부터 적용)

(26) 과밀학급 담임 가산점(2020.7.16. 신설)

- 일반학급 편성기준을 초과한 학급 해당
- 월 0.01점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함.) (2021.3.1. 실적부터 적용)

<추록 2> 도 규모 및 전국규모 인정대회

순	영 역	대 회 명	주 관 처	대회규모	비 고
1	과 학	“과학의 날” 작품 모집	도교육청	도	
2	과 학	모형항공기 날리기 대회	공군사관학교	도 · 전국	
3	과 학	과학상자조립 경진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4	과 학	과학상상 그림그리기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5	과 학	전자과학 실험 경진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6	과 학	모형항공기 공작경진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7	과 학	과학실험 경연대회	도교육청	도	
8	과 학	모형자동차 경진대회	도교육청	도	
9	과 학	산수 · 수학경시대회	도교육청	도	
10	과 학	컴퓨터 경진대회	도교육청	도	
11	과 학	발명품 경진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12	과 학	자연환경 탐구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13	과 학	학생과학전람회	도교육청	도 · 전국	
14	과 학	과학탐구 발표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15	과 학	과학탐구 실험대회	도교육청	도 · 전국	
16	예 능	예능경연대회	도교육청	도	
17	예 능	특수교육 자료전	도교육청	도	
18	독 서	독후감 발표대회	도교육청	도	
19	체 육	소년체전	도 · 문체부	도 · 전국	
20	체 육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	문화체육부	전국	
21	체 육	각종 회장기 대회	각 협회	전국	5개도 이상참가
22	영 어	영어 말하기 대회	도교육청	도	

* 2003.2.28.까지 실적 적용

도 규모 및 전국규모 인정대회(2014.4.30. 개정)

순	영 역	대 회 명	주 관 처	대회규모	비 고
1	과 학	청소년과학경진대회(7종)	교육정보과학원	도 · 전국	
2	과 학	모형항공기 날리기 대회	공군사관학교	도 · 전국	
3	과 학	정보올림피아드대회	교육정보과학원	도 · 전국	
4	과 학	발명품경진대회	교육정보과학원	도	
5	과 학	과학전람회	교육정보과학원	도 · 전국	
6	과 학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6종)	교육정보과학원	도 · 전국	
7	과 학	정보활용교육우수사례연구 발표대회	교육정보과학원	도 · 전국	
8	과 학	인터넷경진대회	교육정보과학원	도	
9	과 학	소프트웨어공모전	교육정보과학원	도 · 전국	
10	과 학	교육방송연구대회	도교육청	도	
11	과 학	대한민국발명전시회	특허청	전국	
12	과 학	ICT활용 창의성대회	교육정보과학원	도	
13	예 능	예능경연대회(특수교육포함)	도교육청	도	
14	예 능	특수교육 자료전	도교육청	도	
15	독 서	독후감 발표대회	도교육청	도	
16	체 육	소년체전, 도민체전	도 · 문체부	도 · 전국	
17	체 육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	문화체육부	전국	
18	체 육	교육감기 대회	도교육청	도	
19	체 육	각종 회장기 대회	각 협회	전국	5개도 이상참가
20	영 어	영어 말하기 대회	도교육청	도	
21	예 능	예능경연대회	자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군수)	전국, 도	2004.3.1. 이후실적 부터 적용
22	체 육	종별 육상대회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도, 시·군	
23	체 육	KBS 대통령배 수영대회	전라북도수영연맹	도, 전국	
24	공 통	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최대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도	
25	공 통	교육감기 및 교육감배 대회	도교육청	도	

※ 2003.3.1.이후 실적부터 적용

도 규모 및 전국규모 인정대회(2018.12.18. 수정)

순	영 역	대 회 명	주 관 처	대회규모	비 고
1	과 학	전북청소년과학탐구대회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도 · 전국	
2	과 학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대회	공군	도 · 전국	
3	과 학	한국정보올림피아드	한국정보화진흥원	도 · 전국	
4	과 학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도 · 전국	
5	과 학	과학전람회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도 · 전국	
6	과 학	과학창의대회	전라북도과학교육원	도 · 전국	
7	과 학	대한민국발명전시회	특허청	전국	
8	예 능	예능경연대회(특수교육포함)	도교육청	도	
9	예 능	특수교육 자료전	도교육청	도	
10	독 서	독후감 발표대회	도교육청	도	
11	체 육	소년체전, 도민체전	도 · 문체부	도 · 전국	
12	체 육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	문화체육부	전국	
13	체 육	교육감기 대회	도교육청	도	
14	체 육	각종 회장기 대회	각 협회	전국	5개도 이상 참가
15	영 어	영어 말하기 대회	도교육청	도	
16	예 능	예능경연대회	자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시장군수)	전국, 도	2004.3.1. 이후실적 부터 적용
17	체 육	종별 육상대회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도, 시·군	
18	체 육	KBS 대통령배 수영대회	전라북도수영연맹	도, 전국	
19	공 통	도교육청 직속기관 주최대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도	
20	공 통	교육감기 및 교육감배 대회	도교육청	도	

<추록 3> (2014.4.30. 삭제)

<추록 4> 군산교육지원청 관내 연구·시범학교 일람표

(2014.4.30. 개정)

년도별	교육부	도지정	시지정
2002년도	신풍	옥구, 대야, 옥봉, 군산남, 문창, 성산, 군산서병설유치원	서수, 임피 옥산병설유치원
2003년도	나운	옥구, 성산, 옥봉, 대야, 소룡(6.1), 군산풍문(특수학급) 군산서병설유치원	서해초등, 대야병설유치원
2004년도	나운	발산, 문화, 옥구, 옥봉, 대야남, 개정, 소룡, 옥산병설유치원	임피, 서해, 산북, 대야, 발산초병설유치원
2005년도	성산	개정, 발산, 대야남, 문화, 옥산초등병설유치원, 신흥, 산북, 대야, 금광, 신풍, 남, 문창(특수학급)	
2006년도		신흥, 산북, 대야, 금광, 신풍, 군산남, 문창, 나포, 금암, 옥구, 선연, 대야남, 성산	
2007년도		나포, 금암, 옥구, 성연, 술산, 당북, 선유도, 구암, 회현, 개정, 옥봉, 신시도, 발산, 문창	
2008년도		술산, 당북, 선유도, 구암, 회현, 개정, 옥봉, 대야, 해성, 옥산, 옥구, 지곡, 발산	
2009학년도		대야, 옥산, 지곡, 회현, 해성, 용문, 선연, 발산, 임피, 금암, 서수	
2009학년도 (2학기)		군산, 군산동, 무녀도, 신풍, 경포, 문창, 신시도, 내홍, 술산, 흥남, 진포, 나포, 군산서, 옥봉, 옥구, 대야남	
2010학년도		군산서, 진포, 미성, 옥구, 임피, 나운, 당북, 선연, 대야, 나포, 흥남, 소룡, 미룡, 신흥, 용문, 나운, 술산, 바다(유), 군산남(특수)	
2011학년도		나운, 흥남, 신흥, 소룡, 미룡, 옥구, 당북, 나포, 임피, 술산, 군산남,	
2012학년도		문창, 당북, 발산, 옥봉, 옥산, 군산중앙(특수)	
2013학년도		옥산, 문창, 군산, 발산, 당북	

※ 2014학년도 이후부터 도교육청 승진·전보가 산점 평정자료(추록)에 따름

<추록 5> 제 5장 제 29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전입자 수 조견표

(2014.4.30. 개정)

전입자 총수	농어촌 가산점 부과지역	농어촌 가산점 미부과지역	비고
1	전보서열 점수가 높은 자		
2	1	1	
3	2	1	
4	3	1	
5	3	2	
6	4	2	
7	5	2	
8	5	3	
9	6	3	
10	7	3	
11	7	4	
12	8	4	
13	9	4	
14	9	5	
15	10	5	

<추록 5> 제 5장 제 29조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전입자 수 조견표

(2020.7.16. 개정) (2022.3.1.자 정기인사부터 적용)

전입자 총수	농어촌 가산점 부과지역	농어촌 가산점 미부과지역	비고
1	전보서열 점수가 높은 자		
2	1	1	
3	2	1	
4	2	2	
5	2	3	
6	3	3	
7	4	3	
8	4	4	
9	4	5	
10	5	5	
11	6	5	
12	6	6	
13	6	7	
14	7	7	
15	8	7	

<추록 6> 2018.8.14. 개정 이전 학교 급지별 가산점

- ① ()안은 월단위 평정점임
- ②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③ 연단위점수 + 잔여월수의 월단위 점수의 합(이하 연단위 + 월단위에는 모두 적용)

급지	2011.3.1. 적용		2018.3.1. 적용		2018.9.1. 적용		가산점 2019.2.28 까지 적용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가지역	나지역	
1	지곡,신풍,경포, 신흥,서해,진포, 수송,용문, 푸른솔, 아리울(2012.3.1)		지곡,서해,진포, 용문,푸른솔, 아리울(2012.3.1) (미장: 2018.3.1자 전보자부터 적용)		지곡,서해,진포, 용문,푸른솔, 아리울(2012.3.1) (미장: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0.50 (0.042)
2	구암,동,남,금광, 산북,군산,중앙 미룡,소룡,홍남, 문화,나운,미장	대야,발산, 개정,옥산, 성산	구암,동,금광,산북, 미룡,소룡,홍남, 문화,나운, (경포,수송,신흥, 신풍: 2018.3.1.자 전보자부터 적용)	대야,발산, 개정,옥산, 성산 (당북: 2018.3.1자 전보자부터 적용)	구암,동,금광,산북, 미룡,소룡,홍남, 문화,나운, (경포,수송,신흥, 신풍: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대야,발산, 개정,옥산, 성산 (당북: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0.75 (0.063)
3	서,월명,풍문,내홍, 미성,문창, 우리별유치원, 바다유치원, 군산중앙유치원 (군산,중앙: 2017.3.1.자 전보자)	임피,서수, 옥구,회현, 나포,당북, 옥봉	서,월명,풍문,내홍, 미성,문창, (군산,중앙: 2017.3.1.자 전보자) (남: 2018.3.1.자 전보자부터 적용) 우리별유치원 바다유치원, 군산중앙유치원	임피,서수, 옥구,회현, 나포,옥봉	서,월명,풍문,내홍, 미성,문창, (군산,중앙: 2018.9.1.자 근무자) (남: 2018.9.1.자 근무자부터 적용) 우리별유치원 바다유치원, 군산중앙유치원	임피,서수, 옥구,회현, 나포,옥봉	1.00 (0.083)
4	해성, 내초분교 오식도(2013.3.1.)	술산, 선연, 금암, 창오, 대야남, 미룡, 오봉, 광산분교	해성, 내초분교 새만금(2013.3.1.)	술산, 선연, 금암, 창오, 대야남, 마룡, 오봉, 광산분교	해성, 내초분교 새만금(2013.3.1.)	술산, 선연, 금암, 창오, 대야남, 마룡, 오봉, 광산분교	1.25 (0.104)
5		여청도,개야도, 선유도,신시도, 비안도, 아미도(분), 무녀도		여청도, 개야도, 선유도, 신시도, 비안도, 아미도(분), 무녀도		여청도,개야도, 선유도, 신시도,비안도, 아미도(분), 무녀도	1.50 (0.125)